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이해식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6422

발의연월일: 2024. 12. 12.

발 의 자:이해식・박상혁・서영교

한병도 • 서영석 • 박정현

염태영 · 천준호 · 정을호

황명선 의원(10인)

제안이유

2020년에 경찰조직이 국가 및 자치경찰제로 바뀌면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많은 개편이 이루어졌고, 특히 시 ·도자치경찰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 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도록 정비하였음.

그러나 이에 비해 국가경찰위원회는 구성과 운영상 독립성을 미처확보하지 못하고 경찰청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위한 지위 및 기능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머무르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.

이에 국가경찰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기관의 성격을 부여하면서, 위원장을 상임직화하고 위원 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무기구를 경찰청으로부터 분리하여 직접 설 치하는 등 국가경찰위원회의 지위 및 조직을 정비하려는 것임. 또한,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의 임용대상자를 추천하는 때에 국가경찰위원회 또는 해양경찰위원회의 심의 ·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「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」 및 「해양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」에 맞추어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·의결 대상에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임.

주요내용

- 가. 국가경찰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도록 명시하고, 위원장을 상임직으로 변경하며,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함(안 제7조제2항 및 제4항신설 등).
- 나. 국가경찰위원회의 위원장은 국가경찰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 재하는 등 그 직무를 규정함(안 제9조의2 신설).
- 다. 국가경찰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규정하고, 그 심의·의결 대상에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(안 제10조제1항제1호의2 신설).
- 라. 국가경찰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사무기구의 장의 임명과 사무기구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(안 제10조제1항제9호 및 제10호 신설 등).
- 마. 국가경찰위원회의 회의 개최, 의결 정족수 및 재의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11조제2항, 제4항 및 제5항 신설 등).

바. 국가경찰위원회의 사무를 종전에 경찰청에서 수행하던 것을 별도의 사무기구를 설치하여 처리하도록 함(안 제11조의2 신설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이해식의원이 대표발의한 「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6423호) 및 「해양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6424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법률 제 호

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1항 중 "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"를 "제10조제1항에 따른 소관 사무를 수행하기"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을 제5항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3항(종전의 제2항) 중 "위원장 및 5명의 위원은 비상임(非常任)으로 하고, 1명의 위원은 상임(常任)으로 한다"를 "위원장 및 1명의 위원은 상임(常任)으로 하고, 5명의 위원은 비상임(非常任)으로 한다"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5항(종전의 제3항) 중 "제2항"을 "제3항"으로, "위원중"을 "위원장과"로 한다.

- ② 국가경찰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.
- ④ 국가경찰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9조의2(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의 직무) ① 국가경찰위원회의 위원장 은 국가경찰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며 국가경찰위원회를 대표한다.

- ② 국가경찰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임위원,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 제10조의 제목 중 "심의·의결 사항 등"을 "소관사무"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야"를 "국가경찰위원회의 소관사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"로 하며,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항 제9호를 제11호로 하며, 같은 항에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장 제2항을 삭제한다.
 - 1의2. 「경찰공무원법」 제7조제2항에 따른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
 - 9.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국가경찰위원회 사무기구의 장의 임명에 관한 사항
 - 10. 제11조의2에 따른 국가경찰위원회 사무기구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
- 제1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3항을 제6항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 설하며,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 - ① 국가경찰위원회는 제10조의 소관사무에 대하여 심의 · 의결한다.
 - ② 국가경찰위원회는 정기적으로 개최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.
 - 1.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- 2. 위원 2명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
- 3. 경찰청장이 요청하는 경우
- 4.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-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심의·의결된 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재의(再議)를 요구할 수 있다.
- ⑤ 위원장은 제4항에 따라 재의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 재의결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의결사항은 확정된다.

제2장에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11조의2(사무기구) ① 국가경찰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경찰위원회에 사무기구를 둔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사무기구의 장은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한다.
 - ③ 그 밖에 사무기구의 조직·정원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준비행위) 경찰청장은 이 법 시행 전에 국가경찰위원회의 사무

기구의 설치를 위하여 인력·시설 및 장비의 확보 등 필요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.

제3조(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경과조치) 제10조제1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제4조(국가경찰위원회 등에 관한 경과조치) ① 이 법 시행 당시의 국가경찰위원회와 국가경찰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이 법에 따라 구성된 국가경찰위원회 및 임명된 위원장 및 위원으로 본다. 이 경우 해당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・의결 및 그 밖의 행위 또는 해당 위원회에 대한 행위는이 법에 따라 구성된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・의결 및 그 밖의 행위 또는 국가경찰위원회에 대한 행위로 본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혅 행 개 정 아 제7조(국가경찰위원회의 설치) ① 제7조(국가경찰위원회의 설치) ① 국가경찰행정에 관하여 제10조 -----제10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 • | 제1항에 따른 소관 사무를 수 의결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행하기-----국가경찰위원회를 둔다. <신 설> ② 국가경찰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그 권한에 속 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 한다. ② 국가경찰위원회는 위원장 1 (3) -----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위원장 및 5명의 위 ----위원장 및 1명의 위 원은 비상임(非常任)으로 하고, 원은 상임(常任)으로 하고, 5명 1명의 위원은 상임(常任)으로 의 위원은 비상임(非常任)으로 한다. 하다. <신 설> ④ 국가경찰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 ③ 제2항에 따른 위원 중 상임 ⑤ 제3항-----위원장과----위원은 정무직으로 한다. 제9조의2(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 <신 설> 의 직무) ① 국가경찰위원회의 위원장은 국가경찰위원회의 회 의를 주재하며 국가경찰위원회

제10조(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・ 의 사항은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 · 의결을 거쳐야 한다.

1. (생략)

<신 설>

2. ~ 8. (생략) <신 설>

<신 설>

9. (생략)

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심의 · 의결된 내용이 적 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할 때 에는 재의(再議)를 요구할 수

를 대표한다.

② 국가경찰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상임위원,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 무를 대행한다.

제10조(국가경찰위원회의 소관사 의결 사항 등) ① 다음 각 호 무) ① 국가경찰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

1. (현행과 같음)

1의2. 「경찰공무원법」 제7조 제2항에 따른 총경 이상 경찰 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

2. ~ 8. (현행과 같음)

9.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국가 경찰위원회 사무기구의 장의 임명에 관한 사항

10. 제11조의2에 따른 국가경찰 위원회 사무기구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

11. (현행 제9호와 같음) <삭 제>

있다.

등) ① 국가경찰위원회의 사무 는 경찰청에서 수행한다.

<신 설>

② (생략) <신 설>

<신 설>

- 제11조(국가경찰위원회의 운영 제11조(국가경찰위원회의 운영 등) ① 국가경찰위원회는 제10 조의 소관사무에 대하여 심의 • 의결한다.
 - ② 국가경찰위원회는 정기적으 로 개최하여야 한다. 다만,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개 최할 수 있다.
 - 1.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경우
 - 2. 위원 2명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
 - 3. 경찰청장이 요청하는 경우
 - 4.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경우
 - ③ (현행 제2항과 같음)
 -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심의・의결된 내용이 적 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할 때 에는 재의(再議)를 요구할 수 있다.
 - ⑤ 위원장은 제4항에 따라 재 의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 내에 회의를 소집하여 재의결

③ (생 략) <신 설>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 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 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사항은 확정된다.

⑥ (현행 제3항과 같음)

제11조의2(사무기구) ① 국가경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 하여 국가경찰위원회에 사무기 구를 둔다.

② 제1항에 따른 사무기구의 장은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· 의결을 거쳐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한다.

③ 그 밖에 사무기구의 조직· 정원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